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 
제265회 제2차 정례회 (2023. 12. 1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건설위원회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행정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권 하 나

### 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3-119
- 나. 제안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안일자: 2023년 11월 17일(금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3년 11월 20일(월)

### 2. 제안사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근거 규정 변경(안 제1조)
- 나. 공유재산관리기금 존속 기한 연장(안 제3조)
- 다.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 신설(안 제4조)
- 라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(안 제5조, 제6조)
- 마. 관련 법령 및 타 조례 단순 재기재 등 중복조항 삭제(안 제12~14조, 제16조, 제17조)

바.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 등 정비(안 제2조, 제9조, 제10조)

## 4. 관계법령

-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8조의2(공유재산관리기금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(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)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## 5. 검토보고

- 동 조례 개정안은 2023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.
-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1조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근거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” 조항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8조의2”로 인용 법조문을 수정하였음.
- 조례 인용 법률의 현행화는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로 인한 구민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법률적합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조치임.

- 그리고, 안 제3조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<sup>1)</sup>에 따라 만료가 도래하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존속기한(2023.12.31.)을 5년간 연장(2028.12.31.)하였음.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은 기금운용의 효율화와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5년 이내에서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 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.
-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금 존치의 타당성과 필요성, 설치목적의 달성, 사업의 지속성, 재정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,
-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여 재산 관련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또한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을 위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제9항에 따른 ‘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쳐야 함.

---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 
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 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 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 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2023. 4. 6. 개최한 ‘2023년 마포구 제1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’의 심의 결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은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, 심의 이후인 2023. 8. 17.부터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음.
- 따라서, 「지방재정법」에서 규정한 적절한 절차를 거친 바, 공유재산관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4조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 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한 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음.
- 그리고,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5조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8 조의2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규정이 당연 적용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 하였고, 안 제6조(기금의 운용 대상 및 방법)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 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였음.
- 기타 관련 법령 및 타 조례 단순 재기재 등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, 법령정 비 기준에 따라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 등을 정비하였음.
- 이와 같이 살펴본 바,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변경·신설하는 등 법적 통일성 및 완성도를 높이고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 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# ■ 지방재정법

- 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- 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-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

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·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·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